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5,6,7,8,13,14,15,16,17,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,9,11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황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,6,7,8에대한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우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우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우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



[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. 2. 12. 2009고합19,2009고합22(병합),2009고합30(병합),2009고합47(병합),2009고합51(병합),2009고합60(병합)]

## 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외 20인

【검 사】정희선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청리 담당변호사 여운철외 5인

## 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8년, 피고인 3을 징역 4년, 피고인 15, 피고인 7, 피고인 8을 각 징역 2년, 피고인 6, 피고인 13, 피고인 14, 피고인 17, 피고인 18을 각 징역 1년 6월, 피고인 5, 피고인 16을 각 징역 10월, 피고인 12를 징역 3년, 피고인 21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5, 피고인 7, 피고인 8에 대하여 각 3년간, 피고인 6, 피고인 13, 피고인 14, 피고인 17, 피고인 18에 대하여 각 2년간, 피고인 5, 피고인 16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1로부터 3,000만 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 2, 피고인 10, 피고인 4, 피고인 11, 피고인 9, 피고인 19, 피고인 20은 각 무죄

피고인 1, 피고인 3, 피고인 1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.

피고인 1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)의 점은 무죄

## [이유]

1

## 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"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..." (판례, 2009고합19,2009고합22(병합),2009고합30(병합),2009고합47(병합),2009고합51(병합),2009고합60(병합))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